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4호”를 “제38조제3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를 “제4호부터 제8호의”로 하고, “제38조제14호”를 “제38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38조제14호를”를 “제38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의 “제38조제4호를”를 “제38조제3호”로 하며, “제38조제14호를”를 “제38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산식은 삭제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분담금)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기획재정부 장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

한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

3. 한국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이 각각 추천

한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3. 금융감독원에 대한 차년도 예산편성지침

4.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부칙

이 영은 8.22일 부터 시행한다.



<p>가 정한다.</p> <p>1. 법 제38조제1호, <u>제6호</u>,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법 <u>제38조제14호</u>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p> <p>2.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법 <u>제38조제14호</u>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p> <p>3. 법 <u>제38조제4호</u>의 검사대상기관과 법 <u>제38조제14호</u>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② ~ ③ ( 생략 )</p> <p>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p>	<p>-----.</p> <p>1. ----- <u>제4호부</u> 터 <u>제8호</u>의 ----- ----- ----- <u>제38조제9호</u>----- -----</p> <p>2. ----- ----- - <u>제38조제9호</u>----- ----- --</p> <p>3. -- <u>제38조제3호</u>----- ----- <u>제38조제9호</u> ----- ----- ----- ② ~ ③ ( 현행과 같음 )</p> <p>④ ----- ----- ----- ----- -----</p>
---	--

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산 식 )

⑤ (생략)

제12조의3(분담금 관리위원회)

<신 설>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산 식 삭제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분담금 관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기획재정부 장관, 예금보험

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3. 한국은행연합회장, 금융투

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

간전문가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금융위원회 사무

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

계

2.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3. 금융감독원에 대한 차년도

예산편성지침

4.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782